

투자권유준칙

사규번호 52-23-1
소관부서 소비자보호실

제 정	2009년 02월 03일
전문개정	2010년 10월 18일
개 정	2012년 01월 18일
개 정	2012년 09월 03일
개 정	2012년 10월 26일
개 정	2013년 05월 23일
개 정	2014년 06월 11일
개 정	2016년 04월 18일
개 정	2017년 01월 01일
개 정	2017년 10월 31일
개 정	2020년 01월 01일
개 정	2021년 06월 01일
개 정	2022년 02월 23일
개 정	2022년 06월 30일
개 정	2023년 09월 01일
개 정	2024년 04월 0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2.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문금융소비자”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 대행인 등이 포함된다.

2. 대출성 상품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인, 겸영여신업자,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③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이하 “투자자 정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2.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직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3. 1호 및 2호의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기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절 투자자정보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서식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⑤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서식 제2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 또는 별지 서식 제2-1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개인투자자]”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⑥ 온라인 투자자들 중 투자성향이 확인된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펀드에 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할 수 있고, 투자자가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펀드가 멀티클래스 펀드인 경우, 클래스별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표시해야 한다.
- ⑧ 회사가 온라인 펀드 판매를 위해 추천펀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펀드의 선정주기·절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추천펀드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 ⑨ 회사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펀드를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시스템, 홈 트레이딩 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에서 제시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자정보의 변경 이외에도, 투자자의 이메일·전화번호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변경 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금전신탁 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 제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해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

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3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을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사실

2. 유의사항: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

⑥ 투자자가 투자자 정보를 미제공한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하거나, 투자권유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투자권유를 중단했음에도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3호)의 “투자자 정보 미제공 투자확인” 또는 “투자권유 중단확인”의 내용을 제5항에 준해 설명하고 확인을 받은 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⑦ 임직원등은 제1호의 투자자에게 제2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서식 제6호)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교부대상자: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2. 대상상품: ELS, ELF, ELT, DLS, DLF, DLT

⑧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①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표 제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1호)의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의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별표 제5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ㄱ.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ㄴ.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ㄷ.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3) 신탁계약

ㄱ.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ㄴ.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1)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2)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1. 임직원등이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등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을 권유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의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사한 펀드란 다음 목의 기준에 따른 펀드를 말한다.

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것

나.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같은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펀드일 것.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회사가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다.

⑤ 투자권유가 없는 온라인 펀드 판매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열회사 펀드임을 표시 해야 한다.

제13조의 2(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영업점 책임자 등을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설명의무

제14조(설명 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 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④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1.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나 취약금융소비자에게 신규 상품,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위험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2. 계속적 거래가 발생하는 단순한 구조의 상장증권(주식, ETF 등) 및 장내파생상품(선물옵션 등) 등을 거래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 투자권유시마다 거래의 방법 및 위험성 등을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최초 계좌 개설 또는 투자권유시에만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이 법 제124조에 따라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사용하여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클래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은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

나.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

⑤ 임직원등은 제1항 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

사전송·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

3.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⑦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⑧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교부하는 각종서류 등을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에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 6. 11>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본호개정 2014. 6. 11>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용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 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에는 제 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 6. 11>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용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3.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 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5.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15조의1(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본조신설 2016. 4. 18>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1>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2.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3.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4.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6. 사채의 순위

② 임직원등은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해 설명할 때에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USD표시) 투자 유의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상품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①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②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지 제2호)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⑤ 회사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표 제3호)와 같이 당해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 6. 11>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

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7조의2(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에서 ‘서면등’ 이라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계약체결일

②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금전등’ 이라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계약체결일

⑥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⑦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⑧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⑨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7조의3(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④ 회사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9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부당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

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호이관 2014. 6. 11>

9.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0.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이용한 매매거래가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과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만한다)
-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2조(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별지 서식 제1호)의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임직원은 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는 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3조(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특칙)

- ① 별지서식 제1호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을 파악할 때 투자자가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1. 취약 금융소비자란, 고령자(만 65세 이상), 미성년자,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등 일반투자자에 비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인식 또는 이해도가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는 투자자로서 투자권유 시 강화된 설명의무가 적용된다는 사항
 - 2.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하더라도 투자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반적인 설명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항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의거하여 투자자가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권유 시 강화된 설명의무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1. 투자자의 불이익 사항: 원금 손실 가능성, 손실가능 범위, 중도해지시의 불이익, 투자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
 - 2. 기타 투자자의 권익에 관한 중요사항
- ③ 임직원은 취약 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반드시 설명상품에 대한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①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표 제7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 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 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금소법시행령 제26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준칙의 폐지) 이 준칙의 시행일부터 2009년 2월 3일 제정된 “투자권유준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특칙)

- ① 제7조 제2항, 별지서식 제11호는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10조 제8항, 제11조 제2항, 별지서식 제12호, 제13호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특칙)

- ① 제16조 제1항, 제2항, 별표 제2호, 제3호 및 별지 제2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호) <개정 2023. 7. 3>

투자자정보 확인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 (지정보관용)

실명확인 및 담당	확인자	기밀관
-----------	-----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이라고 함)에 근거하여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हे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맞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금소법 제18조 및 금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좌번호	■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 본인/대리인 구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동 항목은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항목은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투자자 정보 확인을 1일 1회로 제한하니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소법 제 17 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 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금소법 제 19 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음영으로 표기 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정보 제공여부	<input type="checkbox"/> (투자자 정보를 제공함)	<input type="checkbox"/> (투자자 정보를 제공 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시에는 체크 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취약 금융소비자 확인 항목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항목으로 상품설명 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금융소비자 예시: 고령자(만 65세 이상), 미성년자,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정성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등

예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또는 제공거부)

일반 투자자정보

1. 연령	<input type="checkbox"/> 만 19 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만 19 세~만 40 세 <input type="checkbox"/> 만 41 세~만 50 세 <input type="checkbox"/> 만 51 세~만 64 세 <input type="checkbox"/> 만 65 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법인
2. 월 소득 현황	<input type="checkbox"/> 500 만원 초과 <input type="checkbox"/> 500 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00 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200 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 만원 이하
3. 재산상태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수입이 있으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input type="checkbox"/> 수입은 있으나 불안정함 <input type="checkbox"/> 연금 외 소득 없음.
4.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input type="checkbox"/> 40% 이상 <input type="checkbox"/> 30% 이상~40% 미만 <input type="checkbox"/> 20% 이상~30%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이상~20%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미만
5. 금융자산 중 투자성 상품* 비중	<input type="checkbox"/> 40% 이상 <input type="checkbox"/> 30% 이상~40% 미만 <input type="checkbox"/> 20% 이상~30%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이상~20%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미만 * 투자성 상품: 금소방상 투자성 상품(주식, 펀드, ELS, 랩, 신탁)
6. 금융상품 투자경험 (중복선택이 가능하고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input type="checkbox"/> 해외주식, 해외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선물옵션 등 <input type="checkbox"/> 주식, 주식형펀드, 원금비보장형 ELS/DLS <input type="checkbox"/> 회사채, 혼합형 펀드 <input type="checkbox"/> 특수채, 금융채, 채권형펀드, 원금지급형 ELB/DLB <input type="checkbox"/> 국공채, MMF, CMA, RP, 예적금 <input type="checkbox"/> 투자경험 없음
7. 투자지식(금융상품 이해도)	<input type="checkbox"/> 매우 높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낮음
8. 투자의 목적	<input type="checkbox"/> 고수익 추구 <input type="checkbox"/> 시장(주가지수) 평균을 넘어선 수익을 추구 <input type="checkbox"/> 시장(주가지수) 평균 수준의 수익을 추구 <input type="checkbox"/> 채권 이자, 주식 배당 수준을 추구 <input type="checkbox"/> 예적금 수준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안정적 투자
9. 투자 예정 기간	<input type="checkbox"/> 3 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2 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1 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6 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6 개월 미만
10. 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일부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최소한의 손실만 감수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보전을 선호함 ※ 해당 항목을 선택한 경우 원금보장가능성이 높은 4 등급 이하 상품(예: RP, CMA, 저위험채권 등)으로 가입을 제한 합니다.
11.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투자경험	<input type="checkbox"/> 3 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1~3 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 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선물/옵션, ELW, ELS/DLS, 파생상품 펀드 등

랩/신탁* 투자자정보

*랩 또는 신탁상품 투자 시 작성 항목 미제공

12. 투자위험 인내 정도*	<input type="checkbox"/> 신규 투자자금 불입 <input type="checkbox"/> 관망 <input type="checkbox"/> 일부 환매 <input type="checkbox"/> 전액 환매(계약해지) * 단기적 (1~2 개월)으로 감내할 수 있는 손실한도를 넘어서 손실 발생 시
13.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수입금액	<input type="checkbox"/> 3 억원 초과 <input type="checkbox"/> 3 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 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 천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 천만원 이하

퇴직연금 투자자정보

*퇴직연금 투자 시 작성 항목 미제공

14. 퇴직연금(DC/IRP) 연간 납입액	<input type="checkbox"/> 1 천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1 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00 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00 만원 이상
15. 총 은퇴자산(DC/IRP/연금저축 등) 규모	<input type="checkbox"/> 3 억원 초과 <input type="checkbox"/> 3 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 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 천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 천만원 이하

투자자정보 제공고객 작성항목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 받았습니니다.
3.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니다.
4. 귀사로부터 '투자성향 진단결과 확인서' 를 교부 받았으며, 본인의 일반/퇴직연금 투자성향이 ()임을 확인 합니다.
 렵/신탁 투자성향이 ()

년 월 일

고객명 : _____ (인/서명)

■ 대리인 기재란 (위임장 경우)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연락처	계좌주와의 관계	위임사항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권한
본인은 위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확인합니다.				본인 (인/서명)
[필수] 대리인 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본인의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를 위한 대리인의 신분 확인 ■ 수집·이용 항목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직업, 주소(지역 또는 직장), 연락처(휴대폰, 지역 또는 직장), 이메일 주소,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 보유·이용기간: 거래종료 후 5년(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인 _____ (인/서명)

■ 직원기재란

상담원 체크항목	<input type="checkbox"/> 이해불능투자자(사유기재)	영업점명 :	상담직원 :	(인/서명)
----------	--	--------	--------	--------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조직명 : 인원수 :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정명 :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산시스템명 :

7. 고객님의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 유무	건 수	최 초 투자일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년 월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FX 스왑(FX Swap)/통화스왑 (Cross Currency Swap)			년 월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구조화 통화 옵션 (Exotic FX Option):KIKO등			년 월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금리 스왑 (Interest Rate Swap)			년 월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신용디폴트스왑 (Credit Default Swap)			년 월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상품 파생 (Commodity Derivatives)			년 월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8. 고객님의께서 거래한 장외파생상품 관련하여 위험회피(헤지)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고객은 향후 체결되는 한화투자증권 또는 여타 금융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에도 본 거래와 합산한 위험회피비율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거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고객은 위험회피대상자산의 실재성 및 위험회피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화투자증권이 요청하는 제반 증빙자료(공시자료 또는 감사보고서 등)를 성실히 제출하였으며 해당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위험회피비율이 100%를 초과하게 된 경우 고객은 한화투자증권에 즉시 해당 사항을 통보할 것이며, 위험회피비율 초과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화투자증권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 고객은 한화투자증권이 위험회피비율이 100%를 초과한다고 판단할 경우 본 거래를 체

iv. 기타사항 : (기타 위험회피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기재)

2) 기초자산이 거래인 경우

i. 거래종류 :

※ 정상거래(수출, 수입), 재무거래(투자, 조달) 및 기타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거래

ii. 거래금액 :

4-2. 계약체결일 현재 본 거래를 위한 위험회피대상자산을 기초로 다른 장외파생상품거래(타사거래 포함)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다른 장외파생거래를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른 장외파생거래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거래종류 :

ii. 거래금액 :

5. 고객님의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고객님의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고객님의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아니오

7. 고객님의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 유무	건 수	최 초 투자일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년 월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FX 스왑(FX Swap)/통화스왑 (Cross Currency Swap)			년 월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구조화 통화 옵션 (Exotic FX Option):KIKO등			년 월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금리 스왑 (Interest Rate Swap)			년 월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신용디폴트스왑 (Credit Default Swap)			년 월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상품 파생 (Commodity Derivatives)			년 월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 투자자 정보 미제공 투자확인

본인은 귀사로부터 투자자 정보 제공의 목적, 활용 등에 대한 설명 들었으나,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자 정보를 미제공 하고 투자성 상품에 대해 투자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귀하께서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투자성 상품 가입 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소법 제17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소법 제19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귀하께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선물/옵션, ELW, ELS/DLS, 파생상품 펀드 등
5. 투자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6. 동 항목은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권유 중단확인

본인은 귀사로부터 투자자 정보 제공의 목적, 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성향을 분석 한 후 투자권유를 요청하여 성향에 적합한 투자성 상품에 대한 주요내용, 위험 등에 대해 설명 들었으나, 해당 투자성 상품의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 위험 등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귀사로부터 투자성 상품 가입 중단을 요청 받았음에도 더 이상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여 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금융회사는 투자성 상품 가입 중단을 요청 하였으나 투자자의 의사로 상품가입 등을 진행하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투자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3. 동 항목은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본인

(인/서명) 대리인

(인/서명)

(별지 서식 제4호) <삭 제>

(별지서식 제5호) <삭 제>

적합성 보고서

적합성보고서 (당사보관용)

파생상품관리자

실명확인 및 담당

책임자

계좌번호		고객명	
------	--	-----	--

▶ 투자자정보확인서 조사결과

1. 취약금융소비자		2. 금융상품 이해도	
3. 투자예상 기간		4. 투자의 목적	
5. 손실인내 수준		6. 파생상품 등 투자경험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위험도

투자성향	고객의 투자성향 표기
투자성향 특징	투자자성향 내용 표기
권유상품	[가임상품 표기]

▶ 투자권유사유

투자권유사유	고객이 선택한 투자권유 항목 표기
기타	입력 내용 표기

▶ 핵심 유의사항

원금손실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생결합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파생상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설명서 및 식원의 설명을 통해 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파생결합상품은 발행회사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기초자산의 거래정지,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종결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책임원칙	파생결합상품의 운용결과 발생되는 이익 또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 됩니다.
예금자보호여부	파생결합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권행사방법	파생결합상품의 특성에 따라 중도상환 여부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 중도상환 가능여부, 중도상환가액 결정일, 결정방법 등 관련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생결합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원천 징수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발생한 이익분에 한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유동성 위험	상장지수채권(ETN)을 제외한 통상의 파생결합상품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동성이 작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 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판매회사 및 판매지점명 : 한화투자증권 [] 점

■ 판매직원: 직위 [] 성명 [] /서명)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 고객정보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 계약해지 사유

대상 상품명				
계약체결일	년	월	일	
(투자성 상품)*	<input type="checkbox"/> 수수료 납부일	년	월	일
*두 가지 중 택1 작성	<input type="checkbox"/> 계약서류 수령일	년	월	일
(대출성 상품)	<input type="checkbox"/> 대출금 지급일	년	월	일
계약해지 사유*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 18②)			
	<input type="checkbox"/> 실명의무 위반 (금소법 § 19①·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 21)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 별도 첨부 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첨부
참고자료	※ 별도 첨부 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첨부

■ 안내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작성자 _____ (서명/인)

(별지서식 제8호) <신설 2021. 5. 31>

위법계약 해지 요구 결과 통지서

위법계약 해지 요구 결과 통지서

■ 고객정보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 계약해지 사유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 17㉓)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 18㉒)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 19㉑·㉓)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 20㉑)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 21)
회사의 판단 결과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 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거절 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 · 합리적 근거	

■ 안내 사항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판단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 및 외부 기관에 민원 등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한국거래소	02-1577-2172
금융투자협회	02-2003-9426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_____년 _____월 _____일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청약 철회 요청서

청약 철회 요청서



계좌번호		고객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청약 철회 대상

- ▶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단위형 상품), 고난도 투자입일계약,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
 - 다만, 고객이 어떠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즉시운용 확인서 작성 등) 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 **(대출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대상 상품명	<input type="checkbox"/> 투자성 상품: (상품명: _____) <input type="checkbox"/> 대출성 상품: (상품명: _____)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2) 계약체결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주의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은 등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첨부한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발송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2021.05

즉시 운용 신청서

즉시 운용 신청서

동등

책임자

계좌번호		고객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상품명			

본인은 귀사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감독규정(이하 '금소법령' 이라고 함.)에 의거하여 상기 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상품으로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설명 들었으나, 본인의 판단에 따라 상기 상품의 즉시 운용을 요청하며 다음 사항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상기 상품의 구조, 주요내용, 위험성, 원금손실 가능성 및 손익귀속 여부 등을 설명 들었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였기에 상기 상품의 지체 없는 운용을 신청합니다.
2. 상기 상품에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3. 당사에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 2번 이상의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 주의 사항

- 동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 대상상품의 즉시 운용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동 신청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2021.05

(별지서식 제11호) <개정 2023. 7. 3>

적정성 판단 보고서

적정성 판단 보고서 (회사보관용)

실명확인 및 발급

확인자

계좌번호		고객명	
------	--	-----	--

+ 금융상품명 및 위험등급

금융상품명	
금융상품 위험도	

+ 고객정보 확인결과

연 령	
월소득 현황	
재산상태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금융자산 중 투자성 상품 비중	
금융상품 투자 경험	
투자지식(금융상품 이해도)	
투자의 목적	
투자 예정 기간	
위험에 대한 태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투자경험	

+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총 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이 유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 되었으므로,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당시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2023.07

www.hamfhw.com

한화투자증권

(별지서식 제12호) <개정 2022. 6. 30>

신용공여 정보 확인서

신용공여투자정보확인서 (지점보관용)

실명확인 및 담당

책임자

신용공여 적정성 파악 신청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정보 (일반금융소비자)를 파악하여 고객이 신청하신 신용공여 상품이 적합·적정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됩니다.

■ 계좌번호	■ 본인/대리인 구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투자자 정보 확인 항목

1. 대출 용도	<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	<input type="checkbox"/> 주식 대주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 매수
	<input type="checkbox"/> 가계자금	<input type="checkbox"/> 법인 자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연 령	<input type="checkbox"/> 19세미만	<input type="checkbox"/> 19 ~ 64 세	<input type="checkbox"/> 65 ~ 79 세
	<input type="checkbox"/> 80 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법인	
3. 보유자산 (소득)	<input type="checkbox"/> 1 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 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 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 억 초과	
4. 보유자산 (부채)	<input type="checkbox"/> 부채 있음	<input type="checkbox"/> 부채 없음	
	<input type="checkbox"/> 월리금 연체 중		
5. 신용 점수	<input type="checkbox"/> 515 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515 점 미만	<input type="checkbox"/> 법인
	※ 고객의 신용점수의 경우 고객의 선택 값과 당사 확인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사에서 확인한 결과를 반영합니다.		
6. 변제 계획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임대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	

투자자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대출용도, 보유자산, 변제계획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니다.
3. 투자자정보가 제공한 정보와 다르거나 또는 신용공여 거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공여 거래가 불가 할 수 있음을 설명 받았습니니다

년 월 일

고객명: _____ (인 또는 서명)

2022.06

www.hanwhawm.com

 한화투자증권

신용공여 적정성 판단 보고서

신용공여적정성 판단 보고서 (지정보관용)



고객번호	계좌번호	고객명

+ 고객정보 확인 결과

구 분	고객정보	적정성 판단 결과
대출 용도		
연 령		
보유자산 (소득)		
보유자산 (부채)		
신용 점수		
변세 계획		
총 합		

+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적정성 판단결과 (총합)	
이 유	

+ 참고사항

1.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신용공여가 고객에게 적정한지 여부를 안내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대출용도, 연령, 보유자산, 신용점수 등 투자자가 제공한 신용공여 정보확인서 작성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신용/대출서비스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로 그 결과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
3. 투자 시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 됩니다.
4. 적정성 판단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공여거래기 불가 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5.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신용점수의 경우 고객의 선택 값과 당사 확인 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사에서 확인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고객명 (인/서명)

2021.08

(별표 제1호) <개정 2023. 7. 3>

• (일반 투자자 정보 확인서) 점수화(Scoring) 기준

항목	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최고 점
1. 연령		1	3	4	3	2	4	4
2. 월소득 현황		5	4	3	2	1	-	5
3. 재산상태		5	3	1	0	-	-	5
4.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5	4	3	2	1	-	5
5. 금융자산 중 투자성 상품 비중		5	4	3	2	1	-	5
6. 금융상품 투자 경험		5	4	3	2	1	0	5
7. 투자지식(금융상품 이해도)		5	4	3	2	1	-	5
8. 투자의 목적		5	4	3	2	1	-	5
9. 투자 예정 기간		5	4	3	2	1	-	5
10. 위험에 대한 태도		5	4	2	1	-	-	5
11.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투자경험	평가 제외							-
총 점(1~11번)								49

• (일반 투자자 정보 확인서)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10번까지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최고점 49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① 항목별 점수합 / 49점 * 100 (소수점 2째자리 절사)

→ 예시) 항목별 점수 총 합이 31점인 경우 $31/49 * 100 = 63.2$ 점

• (일반 투자자 정보 확인서) 투자성향 분류

- 점수 결과에 따라 투자성향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성향
20점 미만	안정형
20점 이상 ~ 40점 미만	안정추구형
40점 이상 ~ 60점 미만	위험중립형
60점 이상 ~ 80점 미만	적극투자형
80점 이상	공격투자형

- 10번 항목(손실감내 수준)에서 “무조건 원금 보존” 을 선택하는 경우

① 20점 이상인 경우: 스코어링 결과에 상관 없이 ‘안정추구형’ 성향 선정

② 20점 미만인 경우: 원래대로 ‘안정형’ 으로 선정

- (랩/신탁 투자자 정보 확인서) 점수화(Scoring) 기준

항목	구분						최고 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2. 투자위험 인내 정도	5	3	2	0	-	-	5
13.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수입금액	5	4	3	2	1	-	5
총 점(1~13번)							59

- 점수 계산방법은 일반 투자자 정보 확인과 동일
- 랩/신탁 잔고 미보유 시에는 랩/신탁 투자성향 삭제 가능
- 랩/신탁 잔고 보유 시에는 반드시 랩/신탁 투자성향 분석 필요
- (랩/신탁 투자자 정보 확인서) 투자성향 분류
 - 점수 결과에 따라 투자성향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성향
20점 미만	안정형
20점 이상 ~ 40점 미만	안정추구형
40점 이상 ~ 60점 미만	위험중립형
60점 이상 ~ 80점 미만	적극투자형
80점 이상	공격투자형

- 10번 항목(손실감내 수준)에서 “무조건 원금 보존” 을 선택하는 경우
 - ③ 20점 이상인 경우: 스코어링 결과에 상관 없이 ‘안정추구형’ 성향 선정
 - ④ 20점 미만인 경우: 원래대로 ‘안정형’ 으로 선정

- (퇴직연금 투자자 정보 확인서) 점수화(Scoring) 기준

- 퇴직연금의 경우 성향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별표 제2호) <개정 2024. 1. 1>

적합성 판단기준

구분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 상기의 적합성 판단기준 적용 범위는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한함.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채권	B+ 이하 또는 무등급	BB+ ~ BB-	BBB+ ~ BBB-	A+ ~ A-	AAA ~ AA-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정부보증채	
CD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됨						
CP/단기사채	B 이하 또는 무등급		A3	A2	A1		
RP				수익형	안전형		
신탁	[주식형]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관리종목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주식형] 그외 주식 해외주식 (해당 통화 수탁)	[주식형] 자사주	시중은행 외 예금 (예금자 비보호)	시중은행 외 예금 (예금자 보호)	시중은행 예금 (예금자 보호)	
			[MMT] 수익형	[MMT] 안정형	시중은행 예치		
	매정형(운용되는 자산의 분류기준 등에 의함)						
	맞춤형 등 신탁(운용자산(복합금융상품 포함)의 비중 기준 등에 의함)						
뱅크아카운트	주식형(파생) 해외주식형	주식형	채권형		증금형 MMW		
	펀드형(운용되는 자산의 분류 기준 등에 의함)						
	혼합형(운용되는 자산의 분류 기준 등에 의함)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 초과손실형	원금 비지급형	원금 부분지급형 (80%이상 90%미만)	원금 부분지급형 (90%이상 95%미만)	원금 부분지급형 (95%이상)	
	ELW	ELW					
장내파생상품	선물옵션						
주식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ETF 해외주식	그외 주식					
펀드	97.5% VaR	50% 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투자설명서 (운용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판매등급 (당사)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복합 금융 상품	상품별 위험도 점수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복합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	상품별 편입비중과 위험도 점수의 곱을 합해 구한 복합금융상품의 위험도 점수에 따라 분류					
		5.5점 이상	4.5점이상~ 5.5점 미만	3.5점 이상~ 4.5점 미만	2.5점 이상~ 3.5점 미만	1.5점 이상~ 2.5점 미만	1.5점 미만
픽지연금 사전지정 운용방법 (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 위험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위험도 분류기준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별 위험도를 투자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전지정운용방법 위험도를 결정(소수점 둘째자리 버림)					
		1점~1.8점	1.9점~2.6점	2.7점~3.4점	3.5점~4.2점	4.3점~5점	

2024. 3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1. RP

- 수익형 RP의 위험등급을 기존 5등급 중 3등급에서, 6등급 중 4등급으로 변경
 - 당사 수익형 RP의 경우, BBB+등급 채권을 일부 편입하나, 담보비율을 105%로 운영중이며, 타사 RP 위험등급 현황을 반영하여 수정 변경

2. 장내파생상품: 1등급 부여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별도 산정 기준('주의', '경고', '위험') 적용]

3.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분류 기준 적용

- 3년 미만 펀드: '(별지 제 2호)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 이라고 함.) <표 2>에 따라 위험등급 분류
- 3년 경과 펀드: 가이드라인 <표 3>에 따라 위험등급 부여
-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VaR로 산출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
- 환율위험 및 유동성 위험은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 정한 바에 따름.

4. 파생결합증권: 시장위험등급(MR) 및 신용위험등급(CR) 각각 산정 후 종합 위험등급 산정

- 세부기준 예시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20% 초과 시 원칙적으로 2등급 부여
 - 원금 부분보장 비율에 따라 등급 세분화 (95% 이상: 5등급, 90% 이상 ~ 95% 미만: 4등급, 80% 이상 ~ 90% 미만: 3등급)
- 위험등급 1단계 상향 조건
 - (기초자산의 수)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기초자산의 종류)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투자자의 이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
 -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원금손실 조건) 낙인베리어가 일정수준 이상(예: 60% 이상), 노낙인 상품의 만기베리어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70% 이상)
 - (레버리지 여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5. 지분증권(주식 등)

- 원칙적으로 2등급 부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 상향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은 1등급 상향
 - 해외주식거래소 상장 종목 1등급 상향
 -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 경고, 관리종목은 1등급 상향 한다.

6. 채무증권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분류
-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

7. 특정금전신탁

-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위험등급 산정
 - 단일 상품이 편입된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산정
 - 복수의 자산을 편입한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 부여,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 설명
 - 비지정형신탁의 경우 편입 가능한 투자 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헤지목적으로 편입한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8. 투자일임계약

- 편입 가능한 투자 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총 위험을 관리하는 상품의 경우 자산의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음
 - 헤지목적으로 편입한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제3-1호)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주의	경고	위험
	원금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위험도별 장외파생상품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 가능 투자성향 점수	2 점 이하	3 점 ~ 5 점	6 점 이상

※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른 투자성향 점수 산정 기준

1. 배점기준

1) 투자자 구분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만 65세 이상 1점, 만 65세 미만 3점
- 법인: 주권 비상장법인 2점, 주권 상장법인 4점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

- 1년 미만 1점, 1년 이상~3년 미만 3점, 3년 이상 5점

2. 점수 산정 방법

1) 투자자 구분별 점수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2) 점수 계산 예시

- 투자경험이 1년이고 만 65세 이상인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포함): 3점+1점 = 4점
- 투자경험이 없고 만 65세 미만인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포함): 1점+3점 = 4점

(별표 제4호) <삭 제>

(별표 제5호)

장외파생상품의 적합성 판단기준

구 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 3년 미만 (3점)	3년 이상 (5점)
개인 (개인 사업자 포함)	만65세 이상 (1점)	금리스왑 옵션매수 (2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4점)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6점)
	만65세 미만 (3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4점)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6점, 8점)	
법인	주권 비상장 법인(2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3점, 5점)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7점)
	주권 상장 법인(4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5점)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7점, 9점)	
<p>※ 장외파생상품의 위험도 분류는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별표 제3호를 참조</p> <p>※ ‘경고’ 위험도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적합한 투자자(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의한 투자성향 점수가 3점~5점, 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6번, 2번, 5번 항목 모두에 “예” 라고 답변한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p>				

(별표 제6호) <삭 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화투자증권(이하 '회사'라고 함.)이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고령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고령투자자의 정의 등)

- ① '고령투자자'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 65세 이상인 당사 고객으로 정의 한다.
- ② '초고령투자자'란 고령투자자 중 80세 이상인 고객으로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당사 고객으로 정의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 ④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는 계좌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장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제3조(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점에 1개 이상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 한다.

1.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내점하는 경우 가급적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이용하도록 먼저 안내해야 한다.
2. 고령투자자가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또는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고령투자자 이외의 투자자도 해당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3.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배치직원은 다양한 고객층을 접해본 경험이 필요하므로 3년이상 지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한다. 단, 지점 업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팀장은 지정에서 배제한다.

② 회사는 비대면 고령투자자를 위한 전담창구(이하 '전용회선' 이라고 함)를 설치하여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 한다.

1. 고령투자자가 전용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전용회선을 안내 해야 한다.
2. 고령투자자의 인입콜인 경우 전용회선을 안내하여 추후 이용 시 가급적 전용회선을 먼저 이용하도록 안내 해야 한다.
3. 전용회선 배치직원은 다양한 고객층을 접해본 경험이 필요하므로 3년이상 지점 업무 또는 콜센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한다.
4. 전용회선은 비대면 고객 대상 상담 및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서(고객센터 등)에서 관리한다.

③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자제해야 한다.

1.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2.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3.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4.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5.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6.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7.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8.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9.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강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④ 회사는 고령투자자 또는 초고령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후 상담내용 등을 녹화 또는 녹음 등으로 기록할 수 있다.

제4조(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 ② 전항에 관련된 사항은 표준판매프로세스 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전담인력은 일정 연한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정한다.

제5조(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①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고령투자자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 ② 회사가 지정한 투자유의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생결합상품(ELS,DLS,ELF,DLF,ELT,DLT), 초고위험 파생/실물 펀드, 신탁(해외채

권), 랩(고위험 이상), 채권(해외채권)

제6조(실버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

① 임직원은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실버프리미엄 서비스를 안내하고 실행한다.

1. 투자권유 유의상품 청약 또는 계약 시 고령투자자에게 '실버 프리미엄 투자확인서'를 징구하여 투자적합성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한다.
2. 고위험(2등급)이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경험 및 금융투자상품 위험성 등의 인지여부를 설문하고, 그 위험성 등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경우 그 내용 등에 대해 재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령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의 가입을 제한한다.
3. 지점장은 다음 각목을 참조하여 면담 등을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상품 가입 또는 계약 전 확인하고 상품 가입(청약)신청서에 결재 한다.
 - 가.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 여부(급격한 성향 변화 등)
 - 나. 투자자금의 성격(생계자금 해당여부 등)
 - 다.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등)
 - 라.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등)
 - 마.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말투, 기억수준 등)
4. 사전확인 결과,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령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단, 고령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판단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점장이 추가로 설명한 후 고객의 투자의사를 재확인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6.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각 목을 참조하여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가족 등 조력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 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령투자자와 조력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력인의 정보를 전산에 입력한다.
 - 나. 고령투자자에게 상품관련 안내, 통보 등 시행 시 조력자에게도 시행해야 한다.
 - 다. 조력자로부터 같이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은 상품(청약)신청서 상의 본인 서명 옆에 조력자의 서명을 같이 받아 두는 것으로 같음한다.
7. 상품판매 후 7영업일 이내에 판매지점에서 고령투자자에게 금융상품 해피콜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 한다.

제7조(상품 개발·판매 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 ①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 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
- ②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3장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제8조(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등 교육 강화)

- ① 회사는 임직원이 동 기준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 대상 각종 교육을 통해 동 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 ① 회사는 준법관리담당 또는 감사실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기록을 유지·보관 해야 한다.
- ②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판매에 대해서는 사규에 의거 신속하게 대응한다.

제10조(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①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4장 초고령투자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제11조(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 ①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 할 수 없고, 임직원이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해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고령투자자가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 지점장의 판단에 따라 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고객은 가족 등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이 전화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음.
 2. 회사는 고객이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 조력자로부터 설명을 같이 들었다는 설명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 필요.
- ⑤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실버 프리미엄 서비스 적용 등)

- ① 초고령투자자의 경우도 동 기준 제6조(실버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기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특칙)

① 제2조 제1항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기준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I. 목적

1. 동 기준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등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1. 적용대상 금융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금소법**」 시행령 제 13조제 2항 각 호의 상품*을 제외한다.

* 연계투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3조제 1항제 2호부터 제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2. 위험등급 산정의 주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하 ‘**판매회사**’)는 「1. 적용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그 절차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3. 위험등급 체계

- 위험등급은 최소 6 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 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4. 위험등급 산정방식

-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 ①기초자산의 변동성, ②신용등급, ③상품구조의 복잡성, ④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환매·매매의 용이성, ⑥환율의 변동성, ⑦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시장위험* 등급은 투자성 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 단계로 산정한다.
 - *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 위험을 통칭
- 신용위험* 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5 조의 3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
-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35 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표 1> 신용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장기등급	B+이하 또는 무등급	BB+~BB-	BBB+~BBB-	A+~A-	국공채 등*, AAA~AA-	
단기등급	B 이하 또는 무등급		A3	A2	A1	

* 자본시장법 제 118 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

-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

- ①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음
 - ②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 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설명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2 항에 따른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로 기재한다.

***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 등 환매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요소 세부내역**

- ①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서에 별도 기재한다.
 - ② 판매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위험등급이 2~6 등급인 경우 2 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위험등급이 1등급인 경우 그대로 1등급 부여**

- 판매회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Ⅲ.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5. 위험등급 산정 시기

-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예: 개방형 펀드)의 경우 연 1회(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한다.
- 다만,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6.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 판매회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7. 위험등급의 표시·설명 방법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
- 또한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 판매회사는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III.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1.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집합투자증권

(1) 공모펀드

-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표 2>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표 2>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ㄱ.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 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ㄴ.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ㄷ.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ㄹ.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 3>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표 3>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VaR 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 등급 상향한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 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사모펀드

- 사모펀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
- 다만,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이 경우 별도로 산정된 위험등급은 2 등급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파생결합증권

- **(종합등급)**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표 4>에 따라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표 4> 시장위험등급(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구분	MR1 (고위험)	MR2	MR3	MR4	MR5	MR6 (저위험)
CR1(고위험)	1	1	1	1	1	1
CR2	1	2	2	2	2	2
CR3	1	2	3	3	3	3
CR4	1	2	3	4	4	4
CR5	1	2	3	4	5	5
CR6(저위험)	1	2	3	4	5	6

※ MR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 등급, CR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등급

- **(시장위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별로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상장지수증권(ETN)은 1~2 등급 내에서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등급을 부여한다.
 - * 기초자산의 1 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 음의 배율로 연동, 해외지수·상품 또는 기타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경우
- 다만, 기초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펀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 (신용위험)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분류하되, <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주식워런트증권(ELW)은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4. 지분증권(주식 등)

- 지분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비상장 주식은 1등급 상향한다.
 - 해외거래소 상장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5. 채무증권

- 발행사의 신용등급, 보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회사채*는 <표 1>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외부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을 감안한다.
 - * 「자본시장법」 제 4조③ 및 ⑦ 제 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파생결합사채) 포함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되,
 - ①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위험등급을 0~2 등급* 상향)하고,
 - ② 당해 채권이 유통되는 해외 시장의 특징 및 환매 또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 등 유동성위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서에 기재한다.
 - 조건부자본증권은 상각, 전환 위험 등 조건을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예: ELT)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다.
 -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을 설명한다.
 -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헤지 목적 파생상품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1-2조의 4 ④ 후단(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준용

7. 투자일임계약

-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 다만,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6.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8. 기타

- 판매회사는 특정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이 기준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IV. 보칙

1. 이 가이드라인은 ' 24.1.1 일 이후 신규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시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24.1.1 일 이후 'II-5. 위험등급 산정시기' 에서 정한 재산정 시점이 도래한 때부터 적용한다.